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

뉴욕시 교육청(DOE)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하고, 교사들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하며 질서 정연한 환경을 학교가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원적 학교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 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주 법은 교육청이 비상 상황 관리와 위기 개입을 다루는 학군 차원 안전 계획과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품행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방문자 관리, 학생 대피 및 기타 학교에 특정된 비상 절차를 포함한 건물 안전 절차를 규정하는 건물 단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은 아래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군 차원 안전 팀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교육청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교육감 규정 및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기타 정책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 학군 차원 학교 안전 계획:

본 계획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계획에는 폭력 행위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학부모 연락과 통지, 그리고 법 집행 기관 연락과 통지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잠재적 폭력 행동을 탐지하기 위한 전략, 중재 및 예방 전략, 학생 사이 및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의사 소통 개선을 위한 전략, 학교 안전 요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 안전 요원의 교육, 학교 건물 안전 및 보안 장치,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비상 사태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안전 교육, 이러한 절차와 계획의 다른 구성 요소를 시험해 볼 훈련 및 기타 연습 활동을 다룹니다.

교육청은 최고 비상 담당관 및 최고 비상 담당관(Chief Emergency Officer)의 부재 대비 부 최고 담당관을 고용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교직원,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응급 대원 간의 의사 소통, 연례 검토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갱신, 학군 차원 안전 계획과 일치하는 내용의 비상 사태 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학교 안전 계획 작성, 건물 단위의 보안 및 테크놀로지,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안전, 보안 및 비상 사태 교육, 비상 사태 대응 훈련을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은 학군 차원 안전 팀과 최고 비상 담당관에 의해 매년 검토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Mark Rampersant 입니다. 그가 부재할 경우, 이 역할은 Jay Findling 이 수행할 것입니다.

a) 학군 차원 안전 팀:

학군 차원 팀은 다양한 기관과 교육청 부서의 대표들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정책 패널(PEP)
- 전미 교사 연맹(UFT)
- 관리직 및 행정직 위원회(CSA)
- 교육청 가정 및 커뮤니티 지원실(FACE)
-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처(NYCEM)
- 뉴욕시 경찰청(NYPD) - 학교 안전부(SSD)
- 뉴욕시 소방청(FDNY)
- 교육청 교육감의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SPP)
- 교육청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
- 교육청 학교 시설 담당부(DSF)
- 교육청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담당실
- 교육청 학교 보건 담당실(OSH)
- 교육청 법률 서비스 담당실(OLS)
- 교육청 학생 통학 담당실 (OPT)
-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DOHMH)

b) 종합 대응 절차(General Response Protocols: GRP):

다음은 각 학교에서 락다운, 대피, 현위치 유지, 피신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비상 대응 프로토콜입니다. 각 프로토콜은 각 대응방법에 해당되는 직원 및 학생 행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네 가지 프로토콜 모두 반드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만약 전화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반드시 뉴욕시 경찰청(NYPD) 및 911에 연락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한 교육감 규정 A-412에 따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 학교 안전부에서는 학교 내 또는 커뮤니티 주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따라야 할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는 학교가 화재, 교내 침입자, 교내의 총격 범인 또는 학교 건물 밖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요약합니다.

모든 비상 사태에 성인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락다운(소프트/하드)

소프트 락다운은 수색팀에 알려진 임박한 위험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 락다운이 있을 경우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행정 팀, 건물 대응 팀 및 뉴욕시 경찰청의 학교 안전 요원(SSA)은 지정된 지시 장소에 동원됩니다.

하드 락다운은 임박한 위험이 파악되고 빌딩 수색 작업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진행중인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소프트/하드 락다운을 시작합니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학교 안전 요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적절한 락다운 조치를 취하고 응급 대원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 교실 밖 복도에 학생이 있는지 둘러보고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합니다.
- 응급 대원이 문을 열거나, “경계 해제”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락다운이 해제되었습니다,” 안내와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부재중인 학생이 있다면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하드 락다운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도망쳐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911 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긴 문 뒤에 숨어서 (락다운 상태 유지) 조용히 있어야 하거나, 만약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긴급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라면 공격자와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Evacuation)

화재 경보 시스템이 교직원 및 학생을 대피시키는 최초의 경보입니다. 하지만 안내 방송 및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대피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 방송은 “알려드립니다” 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한 줄로 섭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 교실 밖으로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코트를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체육복 차림인 학생들은 탈의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걸음이 없는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따뜻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 대피 폴더(출석 기록지와 어셈블리 카드)를 지참합니다.
- 화재 대피 훈련 포스터에 명시된 대피 장소로 학생들을 안내합니다. 항상 추가 지시 사항이 있는지 경청합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파악합니다.
- 부상, 문제 상황 또는 부재중인 학생이 있는지 어셈블리 카드를 이용해 학교 교직원과 응급 대원에게 보고합니다.

피신(Shelter-In)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립니다: 피신하십시오. 모든 출입구를 확보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 건물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 일상 업무를 계속합니다.
- 교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 상황에 촉각을 세웁니다.
- 일상 업무를 계속합니다.

피신 지시는 “경계 해제”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피신이 해제되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 지시를 받습니다.

건물 대응 팀 멤버, 층별 관리담당자, 피신 담당 교직원은 모든 출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해당 교직원과 그들의 구체적인 책임은 각 건물 안전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위치 유지(Hold)

현위치 유지는 학교 건물 내 상황이 발생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계 해제”가 발표될 때까지 교직원, 학생, 방문객이 현재 위치에 머무르면서 일상 업무를 계속해야 할 때 발동됩니다.

현위치 유지는 학교 커뮤니티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건물 내 사건을 관리할 때, 또는 응급 대원이 지시할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위치 유지는 소프트 또는 하드 차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됩니다: “알립니다: 현위치 유지를 실시합니다. 모든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경계가 해제될 때까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주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 회 반복.)

위치 유지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교직원은 반드시:

- 현위치에서 문을 잠급니다.
-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현위치 유지가 발표되었을 때 교실 밖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알립니다.

학생/교직원은 반드시:

- “경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일반적으로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를 무시합니다.
- 교실 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치 유지가 해제될 때까지 반드시 현재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c) 위협,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 및 위협 평가:

학교 관계자들은 물리적 상해에서 폭파 위협까지 학생, 학교 교직원 및 방문자에 의한 협박 또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 관련 사건,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 의한 범죄 또는 의료적 응급사태 관련 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12(아래 주요 문서 참조) 및 위협 대응 절차를 포함한 기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종합 대응 절차(GRP)는 모든 위협과 폭력 행위에 대응하고, 학군 교직원 및 911 응급 대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사용될 것입니다. 도착 즉시, 사건에 특정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 및 학교 안전 요원은 모든 학군 및 비상사태 대응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또한 학생들의 스스로를 향한 위협에 대응할 준비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위기대응 팀을 구성하고 자살 시도, 자살 행동 및 자살 충동을 다루기 위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755 및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학생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 관계자들은 행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중재를 사용하고 학교 위기 완화 계획에서 확인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해당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 고려사항이 허락된다면 학부모에게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행동 위기에 처한 학생 대처법은 교육감 규정 A-411 을 참고하십시오.

d) 학교 안전 요원:

1998 년 9 월 교육청, 교육감 및 뉴욕시는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의 합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안전 요원의 선발, 배치, 훈련, 평가 및 관리를 포함한 학교 보안 기능을 뉴욕시 경찰청이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이후 지속되었고 그 후 2019 년 6 월 19 일에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된 MOU 는 교육청 학교에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유지를 위한 학교 관리자, SSA 및 뉴욕시 경찰청의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교의 주요 역할 강조, 학교 직원들이 SSA 에 연락하여 학생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 정의, 위험 축소를 포함한 SSA 및 뉴욕시 경찰청 직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뉴욕 경찰이 학교 관할장소에서 학생들을 심문할 수 있는 때와 방법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와 함께 체포 또는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를 대체 또는 대신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MOU 는 하단의 주요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연수 및 훈련:

모든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2 년동안 유효한 비상사태 대비 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수는 7 월과 8 월에 제공되며 9 월 1 일 이후 학교장 직책을 맡은 신규 학교장을 위해서는 학년도 중에 제공됩니다.

모든 교육청 직원은 잠재적 폭력 행위 조기 탐지뿐만 아니라 학교 및 관계부서 행정 건물에서 사용될 응급사태 대비 절차에 대한 연례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수가 9 월 15 일 전 및 신규 채용자를 위해 학년도 중 필요시에 실시되도록 연간 개학일 트레이닝 데크(Annual Opening Day Training Deck)가 모든 학교에게 제공됩니다. 학교 건물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청 직원은 9 월 15 일 이전 또는 채용 후 30 일 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연수 모듈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및 이용 가능한 학교 자원에 대한 교육을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받아야 합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검토하는 수업은 반드시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학교는 파워포인트, 비디오 및 수업 계획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포함한 학교 비상사태 절차를 다루는 정보는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반드시 가정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안내 편지와 비상사태 절차에 대한 요약문은 가정들에 배포하기 위해 학교에 제공됩니다.

모든 학교는 비상사태 대응 훈련의 구성요소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다음의 트라우마 기반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비상 대피 훈련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동에 제한을 받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이 필수 훈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FDNY 에서 승인한 대피실, 소방 대피 장소나 구조 지원 장소, 혹은 FDNY 승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안전 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피실 등으로 피신 시켜야 합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에 최소 12 번의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 중 8 번은 반드시 12 월 31 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8 번의 훈련에는 반드시 대피 및 락다운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번의 훈련 중 적어도 4 번의 락다운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한 번은 반드시 10 월 31 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2 월 1 일 및 3 월 14 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의 훈련은 학교의 재량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 비상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하에 점심 시간 및 예고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일 및 시간대에 실시될 것입니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일과 중 시행되는 이러한 훈련이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학교 총기사건이나 기타 폭력, 비상사태를 모방한 소품, 배우, 시뮬레이션 없이 발달적, 연령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실시 중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현재 실시되는 것이 훈련이란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훈련실시 최소 1 주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지역 응급사태 대응팀 및 준비 관리자들이 마련한 폴스케일 훈련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정규 수업일이나 학교 부지 내에서 학교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획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학부모 또는 부모 관계에 있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는 학생들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시 응급 대원(NYPD, FDNY, NYCEM)과의 협력 하에, 교육청은 대피, 피신 및 차단이 필요한 비상사태에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보로에 있는 여러 학교 건물에서 다양한 훈련이 잘 시행되는지 관찰합니다. 팀은 효과성을 산정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지도자 및 다양한 기관들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f) 학부모 통지:

학교 내 폭력 행위의 위협 또는 실제 발생은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폭력 위협 또는 발생 시, 학교 관계자는 반드시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준비가(상기 정해진 바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체없이 학교 커뮤니티, 특히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통지(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관련 교육청 정책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교육감 규정에 따라 학부모, 교직원, 선출된 공직자들은 문자 메시지, 전화 및/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NotifyNYC 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리더들은 학교 내 특정 비상사태 발생 시 학부모와 학교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는 학교 특별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가정, 학생 및 직원에게 안전하게 통신을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송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학교들은 락다운이나 대피, 현위치 유지, 피신 등의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휴대 장비나 데스크톱에서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동 메시지 템플릿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학교들은 수퍼인텐던트, 현장 자문 및 언론담당실의 자문을 받아 통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4 에 따라(하단 주요 문서 참조), 모든 학교는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 안전 계획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반드시 다음의 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미 교사 연맹(UFT) 지부장, 건물 관리 담당/대리인, 교내 학교 안전 관리인 레벨 III/대리인, 지역 법집행 관계자, 학부모회 회장/대리인, 영양사/현장의 급식 서비스 대리인, 학교에 상주하는 통학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멤버, 지역 화재 담당자, 지역 앰블런스 또는 기타 응급상황 대응 기관, 학생회 대표(적절할 경우), 그리고 기타 학교장(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한 사람. 각 학교의 안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교는 명령 체계 및 건물 대응 팀, 위기대응 팀을 포함한 다양한 팀을 설립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을 조정할 행정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학교 건물 입장 및 방문객 관리 절차, 보안 배정 및 일정, 침입자 발생 시 절차, 적절한 법 집행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사태 의사소통 체계, 없어진 학생이 있을 경우의 절차, 출입문 경보에 대한 대응 절차 및 대피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직원과 학생, 그리고 건물 평면도 등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획은 건물 대응팀의 역할 및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모든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명시합니다. 각 건물 단위의 계획은 위험물질 유출, 침입자, 폭탄 위협, 인질극 또는 총격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이에는 대피, 피신, 현위치 유지, 락다운이 포함됩니다. 건물 수준의 계획은 반드시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ffice of Safety and Prevention Partnerships: OSPP)에 의해 개발된 안전 계획 견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매 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및 가정과 공유할 수 있는 건물 단위의 안전 정보는 학교 안전 계획 교직원용 또는 학부모용으로 각 학교장의 요청 시 제공됩니다. 학부모 지침서 견본은 하단 주요 문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건물 수준의 비상사태 대응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 교육청 중앙 대응 팀(CRT)

중앙 대응 팀(CRT)은 다양한 교육청 부서 및/또는 기관/시설 회사 밖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교육청 부지 내에서 발생시 다양한 교육청 사무실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리더십에 의한 종합 비상사태 대응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 대응 팀은 또한 심각한 기상 상황 및 공공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상황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시니어 리더십이 시기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관련 교육청 직원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을 도모합니다. 중앙 대응 팀은 해당 상황이 학생의 건강/안전 및 학교 건물 장비/시설의 작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 대응 팀은 학교 커뮤니티가 대응해야 할 위험과 조치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각 활동 후의 보고를 통해 미래 사고에 대한 대비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뉴욕시 경찰청(NYPD), 뉴욕시 소방청(FDNY), 교통국(MTA), 뉴욕시 비상사태 관리부처(NYCEM) 및 보건 정신 위생청(DOHMH)과 사회복지부(DSS)와 같은 여러 기관의 기타 비상 관리 팀을 포함하는 다른 뉴욕시 기관들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와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청 안에서 중앙 대응 팀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에서 모든 중요한 교육청 팀과 함께 노력합니다: 학교 시설들 및 해당 시설 부 디렉터(DDF),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및 해당 보로 안전 디렉터(BSD)가 조율을 합니다. 시설 부 디렉터들과 보로 안전 디렉터들은 비상사태에 학교장과 각 학교의 건물 대응팀(BRT)의 각 리더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4 - 계획 운영의 연속성(COOP)

교육청의 계획 운영의 연속성(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COOP)은 그 지역의 자연 활동, 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 기술이나 공격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상사태 상황 동안 서비스가 계속해서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처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매년 교육청에 의해 검토됩니다. (NYCEM).

각 부서의 COOP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를 포함한 지역에 관련한 다양한 비상사태를 다룹니다:

필수 기능: 정상적인 활동의 중단 후에 수행되는 중요한 활동과 이러한 필수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기술 또는 인력.

승계 순서: 해당 관계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사태 시 고위 기관 사무실의 임명을 위한 조항.

권한 위임: 중앙, 현장 및 모든 기타 레벨과 위치에서의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과 직책에 의한 식별.

지속적 시설: 주요 시설 이외에, 특히 연속성 있게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 지속적 시설, 또는 "대체 시설" 이란 단지 다른 장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동식 사무실 개념과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선택 사항도 의미합니다.

지속적 의사소통: 모든 조건 하에 다른 기관과 필수 기능을 함께 수행할 능력을 제공해주는 의사소통.

중요 기록 관리: 지속적인 상황에서 필수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자 및 종이 문서, 참고 문서, 기록,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식별, 보호 그리고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인적 자본: 지속적인 사건 동안의 비상 직원 및 배정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타 특수 분야의 직원.

실험, 연수 및 연습: 기관의 연속적 계획이 지속적인 사건 발생 기간 동안 기관의 필수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

통제 및 지시의 권리 이양: 기관의 주요 운영 직원 및 시설로부터 다른 기관 직원 및 시설로 필수 기능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

재구성: 잔존하는 기관 및/또는 대체된 기관의 직원이 원래의 또는 대체된 주요 운영 시설에서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으로 재개하는 과정.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는 관리자, 직원, 학생, 학부모 및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 정책, 절차 및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되며, 배포될 것입니다. 공공지원 자원은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 통학 교통

교육감 규정 A-801 (핵심 문서는 아래 참고)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는 공립, 차터 및 비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유자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MTA) 및 버스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저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학생 통학 담당실(Office of Pupil Transportation: OPT)입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OPT는 직원 훈련, 노동력 관리, 차량 점검 및 사고 관리 등 종합적인 4 분야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원 훈련: 계약을 맺은 버스 회사들은 모든 버스 기사들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에서 필수로 정한 보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버스 담당 직원들에게 턴키로 실시되는 연례 연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연수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Vision Zero 안전 운전 이니셔티브.
- 안전 개선을 위한 주의집중 강화 운전 테크닉.
- 리프트 조작 및 휠체어 고정 등을 포함한 안전한 버스 운행법.
-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승하차 하고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특수한 니즈가 있는 아동 케어.

노동력 관리: OPT에는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법준수와 행동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 모든 자격증, 연수 및 면허 갱신 관리.
- 직원 정직 및 재배치 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
- 차고지 현장에서 직원 검사를 통해 담당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추고 차량을 운행하는지 점검.
- 차량 관리: OPT에서는 차량 안전 및 관리 전담팀을 두고, OPT 승인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차고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량 연식 요건을 정하여 모든 차량이 운행에 적합한지 확인.
- 기사 행동 및 안전 추적을 위한 GEOTAB (GPS) 시스템 운영.

노동력 관리: OPT에는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법준수와 행동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 버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학생 안전 도모.
- 학교, OPT 내부 직원, DOE 기타 부서 직원 및 버스회사와 함께 신속한 후속조치 및 다음 단계 파악.
- 데이터를 검토하여 훈련 및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및 노선 파악. 차고지 현장에서 직원 검사를 통해 담당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추고 차량을 운행하는지 점검.

6 - 품행 규정

품행 규정은 학생에게 기대되어지는 표준 품행 및 비행 행동에 대한 개입, 지원, 규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다루고 대응하기 위한 조항, 퇴실 및 정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학부모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통지문을 제공할 정책 및 절차, 보고를 위한 필요 요건,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할 필요 요건, 직원 연수를 위한 필요 요건,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과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를 구축에 중점을

둔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포함하는 학생의 품행을 규율하는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권위기관에 자주 불복종하는 18 세 이하의 학생은 가정 평가 프로그램(Family Assessment Program)에 의뢰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부모는 PINS(감독이 필요한 자: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영장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동 복지국(ACS) 가족 평가 프로그램(FAP)을 통해 전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FAP 웹사이트에는 PINS 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acs/justice/family-assessment-program.page>). 학부모님들은 예방 헬프라인에 (212) 676-7667 번으로 전화하여 자발적으로 예방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들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가정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ACS - 예방 서비스 (nyc.gov) 무단결석 및/또는 학교 품행문제가 대두될 때, FAP 이나 예방 서비스 제공자는 학생의 출석/학교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학교가 추가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도합니다. FAP 는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없애거나 청원서의 교육 관련한 주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에 연락하여 무단결석 또는 학교 품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또한 중재에 대한 문서와 교육관련 문제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서의 제출없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서가 제출되고 학교 교직원의 도움이 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학교 교직원의 법정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규율 규정:

규율 규정은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설립합니다. 이는 상담 및 회복 수단과 같은 기타 학교 차원의 중재를 통하여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징계 대응은 예방 및 효율적 중재를 강조하고,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령에 맞는 점진적 중재와 지원, 그리고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하여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징계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b) 중재 전략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 및 학업적으로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풍토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친화적 성격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직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들은 학생의 품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 예방 전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중재 전략은 규율 규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재 및 예방적 접근 방식에는 가이던스 컨퍼런스, 학부모 아웃리치, 갈등 해결,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카운슬러 교직원의 중재, 학생 업무 담당팀에 의뢰, 회복 수단, 협동적 문제 해결, 개인/그룹 카운슬링, 개별 지원 계획,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멘토링, 사회-정서적 학습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 의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목적을 이해시키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의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이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업 및 행동 기법 및 접근을 사용합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같은 지원 직원들이 포함된 학제통합 팀은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이 팀들은 "위험한 상태"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연령에 맞는 점진적 징계 대응은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c)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교육청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을 행하지 않고, 실제 또는 보여지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의 이유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및 교육 분위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은 교육감 규정 A-832 와 규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이 문서들은 이러한 행동을 예방, 보고, 조사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832 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학교가 해당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업, 교과과정 및 자세한 시행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데크와 보충 자료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리더는 아직 교육받지 않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 학부모 참여 및 통지: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한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의 부모는 위탁 부모 및 기관에 더해 자녀의 품행 또는 징계 조치 관련 연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규율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규율 규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도울 방안으로 학교와 협력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 장려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행정 직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학부모에게 규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워크숍 트레이닝 데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사 및 교직원들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상담할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 및 중재를 논의하기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자녀의 학교 관계자에게,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지원실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e) 교육: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포용적인 학교에서 학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갈등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고 교훈적인 순간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회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학생의 사회-정서적 기술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 그 결과 정확하나 징벌적인 규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교내 학생 품행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학생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표준 품행,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원과 중재, 그리고 품행 기준을 어겼을 때의 징벌 대응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들이 규율 규정,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및 뉴욕시 교육청 허용 가능한 인터넷의 사용 및 안전 정책을 학생들과 검토하도록 시간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교육청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품행에 대해 숙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규율 규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령에 맞는 학급 교육을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규율 규정에 관하여 최소 한 번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상호 활동, 프로젝트 제안 및 학생간 협동 학습 경험의 기회, 그리고 학생 트레이닝 데크 워크숍을 포함하는 표준 기반의 연령에 맞는 수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반드시 모든 교직원과 함께 규율 규정을 검토하고 규율 규정의 목적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상호 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전문 개발 워크샵 트레이닝 데크가 제공됩니다.

7 - 직원 폭력 예방

2024년 1월부로, 교육청에서는 직장 폭력 방지법(뉴욕 주 노동법 제 2 항, 27-b 조) 요건을 준수하도록 고안된 직장 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에서 직장 폭력이란 직원이 고용의 일환으로 직업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가해진 일체의 신체적 공격이나 공격적 행동을 지칭합니다.

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인계되고 교육청 정책, 규정 및 단체교섭 협의조약에 의거하여 교육청 소유지에서 격리되고 및/또는 처벌 및/또는 인사조치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직장 내 폭력이나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일환으로 모든 직원들은 연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8 - 비상 원격 수업 계획 (ERIP)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컴퓨팅 기기 사용을 보장하거나 동기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방법들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정책과 절차도 시행 중입니다.

a) 기기 사용

뉴욕시공립학교(NYCPS)는 학생용 기기 배부를 추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기기 및 NYCPS 에서 배급한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 등을 포함하여,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해 기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들은 중앙에서 배부한 기기들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중점을 둘 것입니다. 중앙 배부 기기들이 고갈되면, 각 학교에서는 별도로 장비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기기들의 단기 임대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들은 자체 예산으로 기존 교육청 계약을 통해 추가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이후 약 55 만 개의 아이패드와 20 만 개의 크롬북을 구입하여 학생들과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기기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b) 인터넷 접근

NYCPS 는 디지털 평등 가족 질문지의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가 가정 내 와이파이 접속이 힘든 가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NYCPS 는 학생과 가정의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구매한 LTE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각 학교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 와이파이 사용 옵션에 관한 정보를 각 가정에 알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교육청 웹사이트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옵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전역의 200 개 이상의 홈리스 셸터는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애플 커넥트(Big Apple Connect)는 NYCHA 거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속의 안전한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각 가정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옵션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옵션이 불가능할 때, 학교들은 기존 계약 업체들을 통해 LTE-가능 무선 핫스팟이나 LTE 서비스가 되는 장비를 구매하여 필요한 가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수업이 동기 수업에 대해 보완적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상 상황 시 원격 수업일에 학생들의 동기 및 비동기 수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중에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대한 기대.

학교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승인된 NYCPS 플랫폼에 디지털 클래스룸을 마련하고 배정된 모든 학생과 연결해야 합니다. 휴교 시 학교 교사 및 기타 의무 서비스 제공자들은 디지털 클래스룸을 통한 원격 동기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청 내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클래스룸 용 현 노동 규정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원격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설명.

학교 테크놀로지 포인트, 교사 및 보조교사들은 필요에 따라 가정에 연락하여 학생들이 가정 기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수업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원격 수업이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는 실물 과제 패킷, 조작할 수 있는 자료, 책 등의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과 보호자가 비동기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들은 원격 수업일이 예상될 때, 학년도의 다양한 시점에 주기적으로 액티비티 및 교재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가정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한 원격 수업안(예, 같은 글자로 시작되는 물건을 이용한 보물찾기, 학생이 자기집 물건을 묘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 등)을 고안하도록 장려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교사는 또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급 전략 및 자료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체 학급의 동기 수업 시간 이외의 세션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1로 수업할 수도 있고/또는 원격 학습 시간 동안 학습한 기술의 연습/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1 보조교사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테크놀로지 포인트는 잠재적인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 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가정과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 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시 장애학생 및 유아원 장애학생에게 특별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 설명.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휴교 시 원격 동기 수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교육청 내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클래스룸 용 현 노동 규정 지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IEP와 연계하여 원격 학습 중 장애 학생과 유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 학습의 기회 제공, IEP 주도의 기술 및 전략을 실천하는 개별 학습 세션, 가정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등의 조합을 통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격 세션을 통해 학생과의 서비스 일정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OT, PT 및 언어치료사는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IEP 목표는 모든 원격으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세션을 다루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가정 및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기초 원조 기금 수령 학군의 경우 본 챕터의 섹션 175.5에 따라, 비상 상황으로 인한 주 지원 기금 청구 대상이 되는 예상 일일 원격 수업시간.

원격 수업 시간은 교내 수업에서 제공되는 시간을 반영합니다. 교육청은 유치원 종일반 및 1-6학년 학생들은 하루 5시간, 712학년 학생들은 하루 5.5시간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문서는 교육청 품행 규정 및 학군 차원 학교 안전 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 문서:

[교육감 규정 A-411 행동 위기 고조 방지/중재 및 911 연락](#)

[교육감 규정 A-412 학교 내 보안](#)

[교육감 규정 A-413 학교에서의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사용](#)

[교육감 규정 A-414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5 교육청 비상사태 통지 시스템](#)

[교육감 규정 A-418 성 범죄자 통지](#)

[교육감 규정 A-420 체벌](#)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교육감 규정 A-432 수색 및 압수](#)

[교육감 규정 A-443 학생 훈육 절차](#)

[교육감 규정 A-449 안전 사유로 인한 전학](#)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

[교육감 규정 A-750 아동 폭력](#)

[교육감 규정 A-755 자살 예방/방지](#)

[교육감 규정 A-830 불법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

[교육감 규정 A-831 또래 성희롱](#)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적 괴롭힘, 협박, 및/또는 따돌림](#)

[모든 타인 존중 웹사이트](#)

[교육청, 뉴욕시 경찰청, 뉴욕시의 수정된 MOU](#)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K-5\)](#)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6-12\)](#)

[학부모 권리 및 책임 장전](#)

[학교 안전 및 비상시 대응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 [허용가능한 인터넷 사용 및 보안 정책](#)

[12 세 이하 대상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13 세 이상 대상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ACS -학부모 핸드북\(nyc.gov\)](#)

2024 년 9 월